

제 5 호 (법인설립허가일 : 1924. 6. 16.)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

1. 법인 명칭: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
2.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7(대치동)
3. 대표자
 - 성명: 류정호
 - 생년월일: 1957년 10월 20일
 - 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3번길 12, 608호(탄방동, 리가아파트)
4. 사업내용:
 - 국내외 선교사업
 - 교육사업(교재출판 및 보급사업)
 - 구호사업
 - 사회사업
 - 사회복지사업(청소년복지사업, 여성복지사업, 장애인복지사업, 장애인의료복지사업, 노인복지사업, 노인의료복지사업, 의료복지사업, 다문화복지사업)
 - 아동복지사업
 - 영·유아보육시설사업
 -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
5. 허가조건: 뒷면에 기재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22년 10월 4일(대표자 변경에 따른 재교부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허가조건 및 준수사항

1. 「민법」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.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,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.
4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
 - 나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- 다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라.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< 변경사항 >

[illegible]